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종류 상향 입법 등〉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0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종류 상향 입법 등 ..... | 3 |
| 2. 동일한 사유로 재조치 통보시 과태료 부과 .....         | 9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달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5.
3. 회 부 일 : 2025. 2.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 제2항제4호 등).

## 주요내용

-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4호).
- 다.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61조 제3항제1호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종류 상향 입법 등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종류(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등)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안 제8조의6),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중한 행위(=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56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br>-----<br>-----<br>-----<br>-----<br>-----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u> -----. |
| <신 설>                                                                                                                                                                            | 1. 정정보도문 게재                                                                                                                             |
| <신 설>                                                                                                                                                                            | 2. 경고 및 경고문 게재                                                                                                                          |
| <신 설>                                                                                                                                                                            | 3.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
| <신 설>                                                                                                                                                                            | 4. 주의                                                                                                                                   |
| <신 설>                                                                                                                                                                            | 5. 공정보도 준수 촉구                                                                                                                           |



현행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8조의6제1항).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도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동조 제3항), 이러한 조치(동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받고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6조제2항제4호).

그런데, 위원회의 조치 명령은 의무위반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sup>2)</sup>

---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정보도문 게재
2. 반론보도문 게재

## 《선관위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종류 및 사유》

| 조치종류          | 조치사유                                                 |
|---------------|------------------------------------------------------|
| 1. 정정보도문 게재   | 선거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반론보도문 게재   |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경고문 게재     | 경고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써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경고         |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 주의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써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6. 주의         |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7. 공정보도 준수 촉구 |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기준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반의

3. 경고문 게재

4. 경고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6. 주의

7. 공정보도 준수촉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게 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조치를 이행한 선거보도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도가 중한 행위(=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로 한정하려는 것임.

### 《현행 규칙 및 개정안의 위원회 조치 종류 비교》

| 현행 규칙              | 개정안                |
|--------------------|--------------------|
| 1. 정정보도문 게재        | 1. 정정보도문 게재        |
| <b>2. 반론보도문 게재</b> | <b>&lt;삭 제&gt;</b> |
| 3. 경고문 게재          | 2. 경고 및 경고문 게재     |
| 4. 경고              |                    |
|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 3.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
| 6. 주의              | 4. 주의              |
| 7. 공정보도 준수촉구       | 5. 공정보도 준수 촉구      |

의무위반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sup>3)</sup> 및 “죄형법정주의”<sup>4)</sup>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3)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 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범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함. (표준국어대사전)

의무위반행위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한정하여(모든 의무위반행위 → 제1호~제3호 의무위반행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은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조치 종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의 개념 차이》

| 정정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
|---------------------------------|------------------------------------------------------|
| 선거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 기준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의 제재조치 및 그 근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 2. 동일한 사유로 재조치 통보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의 통보를 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br>· ② (생략)<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생략)<br><u>&lt;신설&gt;</u><br><br>2. ~ 5. (생략)<br>④ ~ ⑫ (생략)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br>·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1. (현행과 같음)<br><u>1의2.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u><br>2. ~ 5. (현행과 같음)<br>④ ~ ⑫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위원회가 일정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8조의6제1항 및 제3항),<sup>5)</sup> 해당 조치를

5)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56조제2항제4호).<sup>6)</sup>

그런데, 인터넷언론사는 불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를 하더라도 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조치 명령을 따른 후에 불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를 반복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의 통보를 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반복적인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공정 선거보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동일한 사유로 재조치 통보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구간은 적게는 1백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 
-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6)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sup>7)</sup>

### 《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

| 구분  |                | 의무위반사항(예시)                                                                     |
|-----|----------------|--------------------------------------------------------------------------------|
| 제1항 | 5천만원 이하        |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
| 제2항 | 3천만원 이하        |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선거여론조사기준 함께 공표·보도 아니한 자<br>•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선거여론조사기준 등록하지 아니한 자 |
| 제3항 | <b>1천만원 이하</b> | • <b>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b>                            |
| 제4항 | 5백만원 이하        |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제6항 | 3백만원 이하        |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제7항 | 2백만원 이하        |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
| 제8항 | 1백만원 이하        |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

한편,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 요건 중 “동일한 사유”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불공정

7) [헌법재판소 1998.5.28.선고 96헌바83]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선거보도의 사실관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sup>8)</sup>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sup>9)</sup>”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측면과 인터넷언론사의 자율성 등 공익과 사익간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8) 예를 들어, 특정 후보 A를 비방하는 기사와 특정 후보 B를 비방하는 기사가 모두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해당될 때 동일한 사유가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 기존에 A를 비방하는 기사로 조치를 받았을 때 B를 비방하는 기사는 동일한 사유로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9)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